

# 베트남 통신서비스 시장 통상환경과 한-베트남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 여혁중\* · 박은지\*\*

2012년 9월 양자 통상 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베트남 FTA는 1차 협상을 개최하였으며, 2013년 5월 2차 협상을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FTA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베트남과의 FTA가 본격화된 현 시점에서 본 보고서는 베트남의 통신서비스 시장 및 규제 현황, 베트남의 WTO 및 기타 타결 FTA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현황 및 통신 협정문 현황, 시장무역장벽 등을 살펴보았다. 베트남의 시장 및 규제환경, 시장개방 현황, 시장장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베트남 FTA의 협상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목 차

I. 서 론 / 40

II. 베트남의 통신서비스 시장 현황 / 41

1. 시장 현황 / 41

2. 외국계 사업자 진출 현황 / 46

III. 통신서비스 주요 규제 현황 / 47

1. 규제체계 / 47

2. 외국인투자 규제 / 49

IV. 통신서비스 분야 통상 환경 / 50

1. WTO 양허내용 / 50

2. FTA 추진 동향 및 시장 개방 현황 / 52

3. 통신서비스 분야 시장장벽 / 59

V. 결 론 / 61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전문연구원, (02)570-4181, hyukjong@kisdi.re.kr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연구원, (02)570-4472, ejpark@kisdi.re.kr

## I. 서 론

베트남은 2012년 기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이어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의 제 3위 교역 대상국이자 최대 투자 대상국이며, 전 세계적으로 미국, 중국, 홍콩에 이어 한국의 제4위 투자대상국이다.<sup>1)</sup> 한국 또한 일본에 이어 대 베트남 제 2위 투자국으로<sup>2)</sup> 한국과 베트남 두 국가의 경제적 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2007년 한-ASEAN FTA를 통해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나, 개방 수준이 제한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보다 발전된 수준의 개방을 도출하고 전방위적 경제협력 관계를 도출하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현재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2010년 6월 한-베트남 FTA 공동작업반 회의를 시작으로 2011년 10월까지 총 6차례 공동작업반 회의를 개최하고, 같은 해 11월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동연구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듬해인 2012년 9월 양자 통상 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베트남 FTA 1차 협상을 개최하였으며, 2013년 5월 2차 협상을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sup>3)</sup>

제1차 협상에서 양측은 향후 협상의 범위, 구조, 일정 등의 지침이 되는 협상운영세칙(Terms of Reference: TOR)을 채택하였으며,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및 무역구제, 지적권 등 기타 규범 분야를 포함하여 한-ASEAN FTA 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로 추진키로 합의하였다.<sup>4)</sup> 제2차 협상에서는 잠정적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경제협력, 법률 및 제도적 이슈 등 총 6개 작업반(working group)을 설치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sup>5)</sup>

1) 한국무역협회, 수출입은행 통계자료

2) 베트남 통계청

3)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FTA 사이트(<http://www.fta.go.kr/new2/main/>)

4) 외교통상부, '한·베트남 양자통상장관회담 및 FTA 제1차 협상 개최 결과'. 보도자료 2012. 9. 4

5) 산업통상자원부, '한-베트남 FTA 제2차 협상 개최'. 보도자료 2013. 5. 27

〈표 1〉 한-베트남 FTA 협상 일지

일자	내 용
2013. 5. 22~24	한-베트남 FTA 제2차 협상 개최
2012. 9. 3~4	한-베트남 FTA 제1차 협상 개최
2012. 9. 3	한-베트남 양자 통상 장관 회담
2012. 4. 20	한-베트남 FTA 공청회
2011. 11. 8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공동연구보고서 채택
2010. 6~2011. 10	한-베트남 FTA 공동작업반 회의 6차례 개최

베트남과의 FTA가 본격화된 현 시점에서 본 보고서는 베트남의 통신서비스 시장 및 규제 현황, 베트남의 WTO 및 기타 타결 FTA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현황 및 통신 협정문 현황, 시장무역장벽 등을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시장 및 규제환경, 시장개방 현황, 시장장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베트남 FTA의 협상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Ⅱ. 베트남의 통신서비스 시장 현황

### 1. 시장 현황

#### (1) 시장 개요

베트남은 2007년 WTO 가입 이후 투자대상국으로서의 가치가 상승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통신시장 역시 꾸준히 높은 성장을 이뤄냈다. 인구통계학적 요소로 보았을 때 향후 몇 년간 지속적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베트남 이동통신 시장은 선불폰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실질 수익률이 낮고, 도·농간 ICT 환경의 격차가 매우 크다. 국영기업인 VNPT와 Viettel이 시장을 장악하고 전반적으로 시장의 투명성이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다.<sup>6)</sup>

베트남 유선통신 시장은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했으나 2010년부터 가입자

수가 하락하여 2012년에는 전년 대비 가입자 수가 약 280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도 유선통신 가입자 수의 완만한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VNPT, Viettel, EVN은 유선통신 가입자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으로 유선통신망을 확대하고 있으나, 모바일 대체의 증가와 VoIP 서비스의 확산으로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말 기준, 베트남의 이동전화 가입자는 1억3,750만명, 보급률은 153%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베트남 이동통신 시장은 국영 통신사업자 VNPT의 소유인 Mobifone 및 Vina Phone, 그리고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는 Viettel Telecom 등 3개 사업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2012년말 기준, 인터넷 사용자는 3,147만명(보급률 35.1%),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478만명(보급률 5.3%)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2> 베트남 통신시장 개관

인구(2011년)	8,784만 명
GDP(2011년)	1,208억 달러
1인당 GDP(2011년)	1,375달러
규제기관	정보통신부
주요 통신사업자	VNPT(Mobifone, VinaPhone), Viettel
유선통신 보급률(2012년e)	8.1%(730만 회선)
무선통신 보급률(2012년e)	153.2%(1억3,750만 가입자)
인터넷 이용률(2012년e)	35.1%(3,147만 이용자)
초고속인터넷 보급률(2012년e)	5.3%(478만 가입자)

주: e: 추정치

자료: KOTRA, BMI(2013), IMF(2012) 재정리

6) BMI(2013), pp.8~9

## (2) 유선통신시장

2012년말 기준, 베트남의 유선전화 회선 수는 730만 회선에 달하며, 보급률은 8.1%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베트남 유선통신 시장은 국영사업자 VNPT가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2000년 10월 Viettel이 인터넷전화 서비스 사업을 개시하면서 베트남 유선 통신시장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Viettel에 대한 사업허가를 통해 VNPT가 독점권을 행사하던 유선 통신 시장에 요금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VNPT 이외에 유선 시장의 다른 주요 사업자들로 Electricity of Vietnam(EVN Telecom)과 Viettel이 있으며, EVN Telecom은 2009년 Viettel에 합병되었다. VNPT, Viettel, EVN은 유선통신 가입자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으로 유선통신망을 확대하는 계획을 지속하고 있지만 모바일 대체의 증가와 VoIP 서비스의 확산으로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유선망 보급률 현황 및 예상

(단위: 천명, %)

구 분	2010	2011	2012e	2013f	2014f	2015f	2016f	2017f
유선전화 회선수	14,374	10,175	7,300	5,694	4,783	4,305	4,089	4,008
유선망 보급률	16.4%	11.5%	8.1%	6.3%	5.2%	4.7%	4.4%	4.3%

주: e/f: 예측치/전망치

자료: BMI(2013)

## (3) 이동통신시장

2012년말 기준, 베트남의 이동전화 가입자는 1억3,750만명, 보급률은 153.2%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높은 보급률로 인해 이동통신 시장의 양적 성장이 더뎠고 있다. 무선통신 가입자 수의 증가율이 2009년 31.2%, 2010년 13.6%, 2011년 5.4%로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향후 수익은 신규 가입자 유치가 아닌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얻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베트남 이동통신 시장은 국영 통신사업자 VNPT의 이동통신 사업 부문인 Mobifone 및 VinaPhone, 그리고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Viettel Telecom 등 3개 사업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2011년 12월 기준으로, 3개 선두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95.5%로 나타난 가운데, Viettel은 37.1%를, Mobifone과 VinaPhone은 각각 29.2%, 29.2%를 점유하고 있다. 베트남 이동통신 시장의 58% 이상이 VNPT에 의해 장악됨에 따라 2011년 3월 MIC는 한 투자자가 복수의 회사에서 동시에 20% 이상의 지분을 가질 수 없다는 내용의 새로운 규제를 내놓았다. 이 규제는 2011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가졌으나, VNPT는 MobiFone을 민영화하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발하며 MobiFone과 VinaPhone을 합병하는 안을 내놓았다.

제8대 사업자인 Indochina Telecom은 2009년 8월, 베트남의 첫 번째 MVNO 허가를 받은 사업자이나 아직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8대 이동통신 사업자의 허가를 부여한지 약 1년 뒤에 MIC는 2010년 1월 Vietnam Multimedia Corporation (VTC)에게 아홉 번째 허가를 부여하였다. 허가 조건에 따라 VTC는 EVN Telecom과 무선 주파수 대역을 공유하여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3G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급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으나 상용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았다.

〈표 4〉 이동통신서비스 보급률 현황 및 예상

(단위: 천명, %)

구 분	2010	2011	2012e	2013f	2014f	2015f	2016f	2017f
이동전화 가입자 수	111,570	127,318	137,503	145,066	149,418	152,407	155,455	158,564
이동전화 보급률	127.0%	143.4%	153.2%	160.0%	163.2%	164.9%	166.6%	168.5%
3G 전화 가입자 수	7,800	8,400	16,000	20,800	24,128	26,541	27,868	29,261
전체 이동전화시장에서 3G 시장 비중	8.9%	9.5%	17.8%	22.9%	26.4%	28.7%	29.9%	31.1%

주: e/f: 예측치/전망치

자료: BMI(2013)

〈표 5〉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 및 점유율 현황(2012년 3월 기준)

(단위: 천명, %)

사업자	가입자 수	시장 점유율
Viettel	44,080	37.1
MobiFone	34,600	29.2
Vinaphone	34,600	29.2
Vietnamobile	2,000	1.7
EVN Telecom	na	na
S-Fone	400	0.3
Beeline VN(GTel Mobile)	3,014	2.5
전 체	118,694	100.0

자료: BMI(2012)

#### (4) 인터넷시장

2012년말 기준, 인터넷 사용자는 3,147만명(보급률 35.1%),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478만명(보급률 5.3%)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베트남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사용되는 기술 방식은 DSL, 케이블 모뎀, Wi-Fi, WiMAX 등 무선 브로드밴드, 위성 인터넷 등이 있으나, DSL 가입자 수가 전체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였다. 베트남 브로드밴드 시장은 국영사업자인 VNPT가 선두사업자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며, 민영 통신사업자인 Viettel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6〉 인터넷 사용자 및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추이

(단위: 천명, %)

구 분	2010	2011	2012e	2013f	2014f	2015f	2016f	2017f
인터넷 사용자 수	26,905	31,159	31,470	32,100	32,742	33,397	34,064	34,746
인터넷 보급률	30.6	35.1	35.1	35.4	35.8	36.1	36.5	36.9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3,644	4,085	4,775	4,966	5,115	5,218	5,322	5,428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4.1	4.6	5.3	5.5	5.6	5.6	5.7	5.8

주: e/f: 예측치/전망치

자료: BMI(2013)

## 2. 외국계 사업자 진출 현황

2012년 12월 일본 NTT Communications(NTT Com)와 베트남 국영통신사 VNPT의 합작투자사인 Global Data Services JSC(GDS)가 외국인 투자 기업 최초로 베트남 정보통신부로부터 통신 네트워크 허가를 획득하였다. GDS는 이미 2009년 베트남에 프리미엄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두었으며, 이번 면허 획득을 통해 베트남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다 총체적인 IC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sup>7)</sup> 또한 NTT의 이동전화 자회사인 Docomo NTT는 베트남 휴대전화 콘텐츠 서비스 공급업체인 VMG에 14억엔을 투자하였고, Docomo NTT의 자회사인 NTT Data는 VietUnion의 지분 40%를 취득하였으며, TD Mobile은 베트남 휴대전화 유통망인 Vien Thong A의 지분 30%를 취득하는 등 일본 통신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sup>8)</sup>

이베이는 2008년 베트남 전자상거래업체인 피스소프트(Peacesoft)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chodientu.com'이라는 온라인 경매 사이트로 공동 운영해오다 2011년 피스소프트 지분 20%를 인수하고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sup>9)</sup> 그밖에 투자펀드인 IDG Venture, ru-Net Global 및 Rebate Network는 베트남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nhommua.com에 각각 6,000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으며, 독일의 Rocket Internet은 베트남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인 lazada.vn, zalora.vn, SNS 웹사이트인 pinspire.vn 등에 투자하는 등 베트남 전자상거래 분야에 많은 투자가 유입되고 있다.<sup>10)</sup>

한국사업자로는 2001년 SKT가 사이공포스텔(SPT)과 경영협력계약(BCC) 방식으로 S-Fone 사업을 통해 베트남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한 후 비엠텔, 모비폰, 비나폰에 이어 4번째 이통사업자로 자리매김했지만,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영협력계약(BCC)

7) 연합뉴스(2012. 12. 13), "NTT Com, 베트남 네트워크 서비스 출시 위해 면허장 획득"

8) KOTRA(2012. 8. 10), "베트남 인터넷 서비스 시장, 외국인 투자 관심 분야로 부상", 해외투자속보

9) 연합뉴스(2011. 3. 16), "이베이, 베트남 전자상거래업체 지분 인수"

10) KOTRA(2012. 8. 10), 각주 7)과 동일



방식의 한계로 2010년 이후 추가 투자를 종료하였다. 그동안 SKT는 합작투자로의 전환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없자 추가 투자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sup>11)</sup> 현재 국내 대표 메신저인 ‘라인’과 ‘카톡’이 베트남에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한류 콘텐츠 및 언어 지원, 지역적 콘텐츠 제공을 통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sup>12)</sup> NHN의 경우 2011년 12월 기준에 베트남에 진출해 있던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기업인 ‘크라제비나 베트남’을 인수하여 모바일 광고 및 게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sup>13)</sup>

### Ⅲ. 통신서비스 주요 규제 현황

#### 1. 규제체계

##### (1) 규제기관

베트남 정보통신부(MIC,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는 베트남의 정보통신 및 방송 분야 정책 개발 및 통합 규제기관이다. MIC는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안과 산업·규제 현황을 바탕으로 국가ICT위원회에서 각 부처 장관과 협의를 거쳐 타 산업과 연계된 일원화된 정보통신 정책을 수립한다. MIC는 2007년 8월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출범, 기존 우정통신부(Ministry of Post and Telematics, MPT)의 업무에 언론·방송·출판 분야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다.

MIC는 정보통신, 방송, 언론, 출판, 우정 산업에 대한 법규 제정 및 정책 수립과 산업 전략 등을 총괄한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통신 및 인터넷 발전을 위한 국가 계획 및 전략 수립, 서비스 품질, 요금 규제, 통신사업 인허가, 주파수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11) 연합뉴스(2009. 10. 13), “SKT, 베트남 이통사업 철수 수순”

12) ZDnet(2013. 4. 9), “카톡-라인, 베트남서 한류 타고 ‘쑥쑥’”

13) 매일경제(2012. 1. 12), “NHN, 베트남·터키·독일 진출”

[그림 1] MIC 조직도



자료: MIC 홈페이지

## (2) 통신 법규

2009년 11월에 가결된 전기통신법(No.41/2009/QH12)은 베트남 내 이뤄지는 통신분야 투자 및 사업활동을 규제하는 관할법령이다. 2002년 전기통신법과 비교하여 개정법은 베트남 민간기업 및 외국인 투자범위 확대가 주요 골자이다. 2007년 1월 WTO 가입과 함께 2012년까지 통신시장 전면 개방약속 이행을 위한 개정이다. 전기통신법은 통신 분야 투자, 통신사업 허가, 번호계획, 인터넷 관련 자원, 상호접속, 기술 표준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 7〉 통신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분야	기존	개정안
통신인프라 구축	정부 및 국영 기업만 가능	개인기업 포함 모든 기업의 통신 인프라 구축 허용
외국 투자자 투자 범위	투자수의 확보만 가능한 BCC 형태에 국한되며, 외국 기업은 자산 취득 불가	조인트벤처 및 기업경영·소유가능 하도록 통신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
통신자원 관리	정부 주도	시장 주도의 통신자원 관리 촉진
통신자원 할당 방식	불투명한 라이선스 할당 방식	자격심사 및 경매방식 적용(주파수, 전화번호, 도메인, IP주소 등의 통신자원 경매 시)
기업 등록절차	중앙/지방 정부에 개별 등록	기업 등록절차만으로 프로세스 단일화

〈표 8〉 베트남의 통신 관련 주요법규

법령	주요 내용
전기통신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통신사업, 보편적 서비스 규정</li> <li>전기통신 설비·구축, 이용자·기업의 통신관련 권리 및 의무 규정</li> </ul>
무선주파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선주파수에 관한 계획, 배분, 무선 허가</li> </ul>
정보통신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T애플리케이션 이용과 개발활동에 관한 규정</li> <li>정보통신 개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li> </ul>

## 2. 외국인투자 규제

베트남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외국기업의 경우 2005년까지는 자산을 보유할 수 없는 경영협력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s, BCC)<sup>14)</sup> 형태의 투자만 가능하였

14) 베트남의 경영협력계약이란 별도의 법인체를 설립하지 않고 양측이 책임을 분담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조건으로 당사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베트남 파트너가 허가를 받고 경영하며, 외국 파트너는 자본과 기술을 대고 경영에 고문형식으로 참여한다. 투자여건이 불안정하던 초기에 많이 이루어진 계약으로 합작투자자와 위탁가공무역(임가공)의 중간형태이다. 경영협력계약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에 전적으로 의존하므로 잉여배분, 경영, 기업해산시 자본금 회수가 모두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계약기간이 끝나면 협력이 종료되므로, 계약기간 내에 자본금 회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별도 법인설립이 없기 때문에 단독투자기업이나 합작기업과 달

으며, 중장기 투자 혹은 경영권의 확보가 가능한 조인트벤처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었다. 하지만 2007년 WTO에 가입한 이후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거나, 기업경영 및 소유가 가능하도록 통신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였다. 2011년 통신법 시행령(Decree 25/2011/ND-CP) 제4조를 통해 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투자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외국 투자자는 직접, 간접 투자를 통해 통신법과 투자법에 따라 통신서비스 사업에 투자할 수 있으며, 비설비 기반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직접투자의 경우 해외 투자자는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 투자 혹은 경영협력계약을 통해 직접 투자할 수 있다. 설비 기반 통신서비스의 경우 베트남에서 통신망 사업 허가를 받은 통신기업과의 합작 투자 혹은 경영협력계약을 통해 직접 투자할 수 있다.<sup>15)</sup>

외국인 투자 지분 비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베트남 국내법 및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 내용과 합치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투자 지역의 국가 통신 발전 계획 및 통신 자원 계획, 통신 설비 계획 등에 부합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IV. 통신서비스 분야 통상 환경

### 1. WTO 양허내용

베트남의 WTO 시장개방 약속을 살펴보면 기본통신서비스의 경우, 음성전화, 패킷 교환 데이터 전송, 회선 교환 데이터 전송, 텔렉스, 전신, 팩스, 전용회선, 기타 서비스(화상회의, 방송을 제외 한 비디오 전송, 이동 전화(지상 및 위성), 이동 데이터(지상 및 위성), 호출, PCS, 주파수 공유, 인터넷 교환, 가상개인통신망)에 대한 시장개방을 약속하였다.

상기 개방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종류 및 설비보유 여부에 따라 상이한 외국인 투

---

리 무한책임을 부담한다.

- 15) 통신 분야 투자와 관련하여 또 다른 특이사항은 통신법 시행령 3조는 통신사업자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개인이나 단체는 다른 통신사업자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자 제한을 규정하였다. 비설비기반 서비스의 경우, WTO 가입 즉시 베트남에서 정당하게 허가받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되었다. 2010년 1월 이후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은 합작 회사 법정 자본금의 65%까지 가능하다. 설비기반 서비스의 경우, WTO 가입 즉시 베트남에서 정당하게 허가받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되었다. 외국 자본 출자비율은 합작회사 법정자본금의 49%까지 가능하다. 단, 가상개인통신망(VPN)의 경우, 합작회사에 대한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이 비설비기반서비스 70%, 설비기반서비스의 경우 49%까지 가능하다.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WTO 시장개방 양허사항을 살펴보면 베트남은 이메일, 음성메일,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전자 데이터교환, 고도/부가 팩스,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 처리, 기타(인터넷 접속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시장개방을 약속하였다. 상기 개방 대상 서비스에 대해 베트남은 서비스 종류 및 설비보유 여부에 따라 상이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비설비기반 서비스의 경우, WTO 가입 즉시 파트너 선택권 제한없이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된다. 2010년 1월 이후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은 합작 회사 법정 자본금의 65%까지 가능하다. 단, 인터넷접속서비스의 경우, 합작회사 설립시 파트너 선택권 제한이 2010년 1월 이후 철폐하기로 하였다. 설비기반 서비스의 경우, WTO 가입 즉시 베트남에서 정당하게 허가받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합작회사 설립 또는 경영 협력 계약 체결이 허용되었다. 외국 자본 출자비율은 합작회사 법정 자본금의 50%까지 가능하다.

〈표 9〉 서비스 유형별 합작회사(JV) 법정자본금에 대한 외국자본 최대출자비율

분류	기본통신서비스	부가통신서비스 (인터넷접속서비스 포함)
설비기반서비스	- '07. 1월 이후: 49%	- '07. 1월 이후: 50%
비설비기반서비스	- '07. 1~'09. 12: 51% - '10. 1월 이후: 65% - 단, 가상전용망(VPN)은 '07. 1월 이후 70%	- '07. 1~'09. 12: 51% - '10. 1월 이후: 65%

## 2. FTA 추진 동향 및 시장 개방 현황

### (1) 베트남 FTA 협상 추진현황

베트남은 현재까지 6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일본(2008년)과의 FTA를 제외한 5건은 모두 아세안 차원에서 체결한 FTA이다. 아세안 차원에서 체결한 FTA는 중국(상품 2004년, 서비스 2007년, 투자 2009년), 일본(상품 2008년), 한국(상품 2006년, 서비스 2007년, 투자 2009년), 호주-뉴질랜드(2009년), 인도(2009년)가 있다. 현재 베트남은 아세안 차원에서 EU와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이 주도하는 TPP<sup>16)</sup> 협상에도 참여하고 있다.

〈표 10〉 베트남의 기체결 FTA 통신협상 결과

구분	체결시기 (서비스)	통신서비스 chapter	통신 양허	양허 수준
아세안-중국	2007. 1	×	○	GATS 동일
아세안-일본	2008. 4. 14 <sup>17)</sup>	×	×	-
베트남-일본	2008. 12	×	○	GATS 동일
아세안-한국	2007. 11	×	○	GATS 동일
아세안-호주-뉴질랜드	2009. 2	(서비스 chapter 內 통신 Annex)	○	GATS 동일
아세안-인도	2009. 8. 13 <sup>18)</sup>	×	×	-

### (2) 기타결 FTA 통신서비스 협정문 주요내용

과거 통신서비스는 대규모의 초기 인프라 투자비용과 기반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으로 인해 많은 나라에서 산업 초기 단계에는 정부가 직접 또는 국영기업이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전 세계적으로 통신서비스의 민영화가 상당히 진행, 완료되고

16)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or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환태평양권  
 력적경제동반자협정

17) 아세안-일본 FTA는 상품분야만 체결됨(<http://www.aseansec.org/22572.htm>)

18) 아세안-인도 FTA는 상품분야만 체결됨(<http://www.aseansec.org/22563.htm>)

관련 시장에 경쟁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초기 투자 비용 등 시장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소수의 기업에 의해 설비 기반 통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통신서비스가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FTA 협정을 통해 당사국의 통신사업자가 상대국 시장에 진출할 때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통신서비스 협정문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통신협정문은 당사국의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FTA 타방 당사국 사업자의 기존 통신 인프라에 대해 접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상대국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당사국 사업자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관행을 막는 효과가 있어, 당사국 사업자가 상대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공정한 경쟁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준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통신 분야 선진국들이 체결하는 FTA에서 통신 분야를 독립챕터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통신협정문의 조항들은 WTO GATS 통신부속서 및 참조문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서 더 나아가 재판매, 망요소세분화, 전용회선, 설비병설 등의 의무를 규정하여 협정당사국 사업자들이 상대국 시장에 진출할 때 최소한의 공정한 조건 속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조치들에 관한 내용까지 담고 있다.

베트남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를 살펴보면 기존의 FTA에서 통신협정문을 독립된 챕터로 체결한 경우는 없으나,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를 통해 서비스 협정문 내 통신부속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이 유일하게 WTO GATS 플러스 내용으로 채택한 통신 협정 사례이다.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통신부속서는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WTO 통신부속서 및 참조문서의 내용을 대부분 차용하였으나, 상호접속, 독립 규제기관, 허가절차 조항 등에서는 내용적으로 WTO 플러스 의무가 일부 추가되었고, 전용회선서비스의 공급, 설비병설 등 WTO 플러스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협정당사국 중 일부 국가는 이행약정(제3조) 조항을 통해 경쟁보장장치, 상호접속, 설비병설, 전용회선, 분쟁해결 조항의 의무를 각 각 시차를 두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베트남 역시 공동병설, 임대회선 서비스, 분쟁해결(공동

병설, 임대회선 관련)에 대하여 본 의무사항이 베트남 국내 법규제에 적절히 반영된 후 3년 후부터 적용된다고 이행약정 조항에 기재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베트남이 체결한 아세안-호주-뉴질랜드 통신부속서의 주요 내용을 조항별로 살펴보겠다.

<표 11> WTO GATS,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통신부속서 비교

구 분	WTO GATS	아세안-호주-뉴질랜드	WTO 외 추가적 내용
적용범위	통신부속서 2조, 통신참조문서 도입부	제1조	
정의	통신부속서 3조, 통신참조문서 도입부	제2조	
이행약정		제3조	각 당사국의 상이한 개발단계와 GATS를 통해 약속한 시장개방 수위를 고려하여 일부 국가는 이행약정을 통해 제4조(경쟁보장장치), 제6조(상호접속), 제7조(설비병설), 제8조(전용회선), 제9.2조(분쟁해결) 의무를 시차를 두고 이행 가능하게 함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가적 의무			
경쟁보장장치	통신참조문서 1조	제4조	
상호접속	통신참조문서 2조	제6조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요율 및 조건이 최소한 상업적 협상 또는 지배적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요건 및 규제기관이 승인한 조건에 따라 체결될 수 있도록 보장
상호접속 분쟁해결	통신참조문서 2.5조	제9조	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기관의 결정에 대해 서면 설명 제공
전용회선서비스의 공급		제8조	전용회선서비스 제공
설비병설		제7조	상호접속에 필요한 물리적 설비 병설 제공



구 분	WTO GATS	아세안-호주-뉴질랜드	WTO 외 추가적 내용
통신규제기관의 독립성	통신참조문서 5조	제11조	통신규제기관의 기능 및 의무가 당사국의 국내법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통신규제기관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결정사항에 대한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
보편적 서비스	통신참조문서 3조	제12조	
허가절차	통신참조문서 4조	제5조	허가가 필요한 정황, 허가취득비용, 허가유효기간 등을 공개할 의무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통신참조문서 6조	제13조	
투명성	통신부속서 4조	제10조	

### 1) 적용범위(제1조: Scope and Coverage)

아세안-호주-뉴질랜드 통신부속서는 공중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에 적용된다. 반면 국내법에 따라 정의되는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의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 부속서는 각 당사국이 시장개방 약속을 하지 않은 공중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 2) 정의(제2조: Definitions)

동 부속서의 목적에 따라 설비병설, 원가지향적, 필수설비, 설비기반공급자, 상호접속, 전용회선, 지배적 사업자, 비차별적, 공중통신전송망, 공중통신전송서비스, 통신, 통신규제기관, 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기술하였다.

### 3) 이행약정(제3조: Transitional Arrangements)

각 당사국들의 상이한 개발단계와 GATS를 통해 약속한 시장개방 수위를 고려하여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협정당사국 중 일부 국가는 이행약정을 통해 제4조(경쟁보장장치), 제6조(상호접속), 제7조(설비병설), 제8조(전용회선), 제9.2조(분쟁해결)의 의무를 시차를 두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베트남은 이행약정 부속서에 공동병설,

임대회선 서비스, 분쟁해결(공동병설, 임대회선 관련)에 대하여 본 의무사항이 베트남 국내 법규제에 적절히 반영된 후 3년 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4) 경쟁보장장치(제4조: Competitive Safeguards)

각 당사국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 사업자인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반경쟁적 행위를 행하거나, 지속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반경쟁적 행위는 반경쟁적 교차보조에의 관여, 경쟁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이용으로 인한 반경쟁적 결과 초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 및 상업적으로 관련 있는 정보의 시의적절한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5) 허가(제5조: Licensing)

각 당사국은 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가 필요한 정황, 허가 신청절차, 허가 심사기준, 허가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조건, 허가심사 소요기간, 허가 신청 및 발급 비용, 허가 유효기간을 포함한 자국 영역 안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허가 관련 모든 조치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각 당사국은 허가 신청자의 요청이 있으면 허가 불허사유를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6) 상호접속(제6조: Interconnection)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당사국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상호접속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제공된다. 적시에 원가지향적인 요율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망세분화가 충분히 이뤄져,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상호접속을 제공받기 위해 망 구성요소 또는 해당 설비에 관해 서비스 제공에 불필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배적 사업자 자사에 제공되는 서비스,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동종 서비스에 대하여 공급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품질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다수의 이용자가 접속하는 망 종단점 외의 지점들에서도 추가적인 소요설비 구축을 위한 비용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요청이 있을 시

상호접속을 제공해야 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 사업자와 다른 당사국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제공자 간의 상호접속에 관한 조건 및 요율이 최소한 상업적 협상이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며, 전기통신 규제기관에서 제정·승인한 표준 조건 및 요율 등에 관한 일련의 참조 지침에 따라 성립될 수 있어야 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에 관한 절차를 공표하거나, 공개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7) 설비병설(제7조: Co-location)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 사업자가 타방 당사국의 설비기반사업자인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호접속에 필요한 물리적 설비 병설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물리적 설비병설이 기술적 이유 또는 공간적 제한으로 인하여 실현될 수 없는 경우, 그 지배적 사업자가 타방 당사국의 설비기반 사업자와 협력하여 실현가능하고 상업적으로 유효성이 있는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고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 사업자가 물리적 설비 병설 또는 대안적 방안을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요금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가 설비병설 또는 대안을 어느 위치에서 제공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 8) 전용회선서비스(제8조: Leased Circuits Services)

각 당사국은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 사업자가 전용회선서비스를 타방 당사국의 공중 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고 투명한 조건과 요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9) 분쟁의 해결(제9조: Resolution of Disputes)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에서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설비병설, 전용회선을

요청한 타방 당사국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상호접속, 설비병설, 전용회선에 관한 조건 및 요금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개된 절차와 합리적인 기간 안에 영향을 받은 타방 당사국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각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은 타방 당사국 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요구할 경우, 이미 공개된 내용이 아닌 이상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결정에 관해서든 문서화된 형식으로 설명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10) 투명성(제10조: Transparency)

각 당사국은 동 부속서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1) 통신규제기관(제11조: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Body)

각 당사국은 국내법 체계의 일부로서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분리된 통신규제기관을 설립 및 유지해야 한다. 각 당사국은 모든 의사결정 권한 등을 포함하는 통신규제기관의 기능과 의무는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각 당사국은 통신규제기관의 의사결정과 사용되는 집행절차가 모든 이해관계자들 앞에서 공정하도록 해야 한다.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통신규제기관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결정사항에 대한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통신규제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면, 당사국은 그 절차가 실제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2) 보편적 서비스(제12조: Universal Service)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기를 원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정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기반을 둔 교차보조정책을 포함하는 이러한 차원의 의무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 중립적인 방식으로 시행되고, 당사국이 정의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반경쟁적이라고 구분되지 말아야 한다.

13) 희소자원의 배분과 이용(제13조: Allocation and Use of Scarce Resources)  
각 당사국은 주파수, 번호 등을 포함한 희소자원의 배분과 이용에 관한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시행해야 한다. 각 당사국은 할당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sup>19)</sup> 당사국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할당한 주파수의 확인을 공표하거나, 공개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 (3) 기타결 FTA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현황

베트남의 기체결 FTA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현황을 살펴보면 서비스 분야 협정이 타결된 모든 FTA에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을 약속하였고, 비교적 최근에 WTO에 가입한 이유로 개방범위 및 개방수준은 자국의 GATS 양허와 동일한 내용으로 약속하였다.

## 3. 통신서비스 분야 시장장벽

베트남 설비 기반 기본 통신서비스의 경우 국영기업 위주의 독과점 경쟁 구조를 가진 시장으로 외국계 통신사업자의 시장 진입 및 성공이 쉽지 않은 시장이다. 설비 기반 통신서비스의 경우 합작투자를 통한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나, 설비 기반 통신서비스 허가를 주요 국영기업에게만 발급해주기 때문에 파트너 선정에 제약이 있으며, 정부의 관련 시장에 대한 불투명한 통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외국계 사업자의 관련 시장 진입 및 성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베트남의 3개 주요 국영사업자의 통신 시장 점유율이 2013년 기준 9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이들에 대한 민영화는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sup>20)</sup>

우선 한국의 SKT, KT의 경우 두 기업 모두 경영협력계약(BCC) 형태로 베트남 통신망 및 통신서비스 시장에 진출한 경험이 있으나, 합작회사 설립의 어려움 및 투자

19) 다만 당사국은 특정 허가를 위해 할당된 개별 주파수의 할당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20) USTR(2012) (2013),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 Vietnam

수익 회수의 어려움 등으로 베트남 시장에서 철수한 바 있다. KT의 경우 1995년 베트남 최대 국영 통신사 VNPT와 경영협력계약(BCC)을 체결하여 베트남 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에 진출하였으나, 수익 회수 문제로 인해 결국 계약 만료 후 사업을 철수하였다.<sup>21)</sup> SKT 역시 경영협력계약(BCC)을 통해 ‘S폰’이라는 브랜드로 CDMA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에 진출했지만 BCC 계약을 통한 수익 배분의 어려움 및 합작회사 설립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투자금의 20%만 회수하면서 사업을 철수하였다.<sup>22)</sup> 또한 러시아의 빈페르콤과 하노이텔레콤이 합작회사를 설립하였으나, 3G사업권 획득에 실패한 후 10%의 투자금만 회수하고 사업을 철수한 사례<sup>23)</sup>가 존재하는 등 외국계 통신 사업자의 지분투자를 통한 시장 진입은 합작회사 설립의 어려움, 수익 회수 문제, 국영기업의 독과점, 이들의 민영화 지연 등 여러 가지 장벽 요인으로 인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베트남의 통신시장 무역장벽은 인터넷 시장에서도 발견된다.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의 특성상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인터넷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유명 인터넷 사이트, 특히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의 이용자 접속을 차단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인터넷 접속 사업자(ISP)들은 정부 지침에 따른 차단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베트남 정부는 이를 부인하는 등 그 법적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지 않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 차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베트남 정보통신부에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으나,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아직 이에 대한 특별한 응답은 없는 상황이다.<sup>24)</sup> 또한 대표적 베트남 이동통신사업자인 비나폰(Vinaphone)과 모비폰(Mobiphone)이 왓츠앱, 바이버 등 해외 모바일 메신저 및 인터넷 전화 사업자에 대해 임의적으로 3G 망사용료 인상을 단행하는 등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해외 부가통신 사업자 견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sup>25)</sup>

21) 디지털타임스(2005. 1. 7), “KT·SKT 베트남 통신사업 ‘제동’”

22) 연합뉴스(2010. 1. 4), “SKT, 베트남 이동사업서 철수 결정”

23) Thanh Nien Daily(2012. 4. 27). “Russian telecom giant withdraws from Vietnam”

24) USTR(2013),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 Vietnam

USTR(2012), Results of the 2012 Section 1377 Review of Telecommunications Trade Agreements

## V. 결 론

베트남 통신 시장은 무선 보급률이 2012년 기준 153%로<sup>26)</sup> 추정되는 등 매우 높은 보급률을 보이나, 아직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되지 않아 향후 스마트폰 중심의 부가통신 서비스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 부가통신 서비스 사업자의 시장 진출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나, 시장 예측의 어려움, 외국인 지분제한, 제한적 합작 파트너 선택권, 지배적 국영 통신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불투명한 개입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시장 장벽들이 적극적 시장 진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한-베트남 FTA 통신서비스 분야 협상을 통해 보다 개방된 시장 환경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받고, 향후 비약적 성장이 예상되는 베트남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시장에서 한국 통신 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시장 진출 기회를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베트남은 WTO 및 한-ASEAN FTA를 통해 기본통신서비스의 경우 베트남에서 정당하게 허가받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합작회사(JV) 설립을 통해 설비기반 기본통신서비스는 49%, 비설비 기반 기본 통신은 65%, VPN은 70%의 외국인지분제한 요건을 두고 있다. 또한 부가통신 서비스의 경우 설비기반은 50%, 비설비 기반은 65%의 외국인지분제한 요건을 두고 있으며, 설비기반의 경우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통신서비스 공급자와의 합작회사 설립 또는 경영협력계약 체결 요건을 두고 있다.

기본통신 및 설비기반 부가통신의 경우 이미 허가받은 통신서비스 공급자와의 합작회사 설립 혹은 경영협력계약 요건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이미 외국인 투자자의 파트너 선택권을 크게 제한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경우 설비 기반 기본 통신 서비스 사업에 대해 국영 사업자에게만 허가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계 사업자의 관련 시장 투자 및 진출에 큰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한-베트남 FTA를 통해 이미 통신서비스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의 합작투자 및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요

25) ZDnet(2013. 4. 9), “카톡-라인, 베트남서 한류 타고 ‘쑥쑥’”

26) BMI(2013). Vietnam Telecommunication Report Q3 2013.

건을 보다 완화하여 모든 베트남 법인과외의 합작투자 및 경영협력계약이 가능하도록 협상 결과를 도출해내어 진출 사업자의 파트너 선택 자율권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베트남은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해 설비기반은 50%, 비설비기반은 65%의 지분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많은 WTO 회원국이 부가통신서비스 시장을 100% 개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폐쇄적인 개방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가통신 서비스 시장의 향후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관련 시장에 대한 지분 제한은 100% 경영권, 통제권 획득의 실패로 인해 야기될 사업 추진 차질, 과도한 거래 비용 발생, 사업 리스크 증폭 등 우리 사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관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때문에 FTA 협상을 통해 부가 통신 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을 철폐하여 보다 개방적인 시장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베트남은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를 통해 유일하게 WTO 통신부속서 및 참조문서 내용에 플러스적 요소를 담은 통신부속서를 채택하였다. 본 통신부속서는 기존 WTO 상호접속, 독립 규제기관, 허가절차 조항에 추가적 내용이 일부 추가되어 있으며, 전용회선서비스의 공급, 설비병설 등 WTO 통신부속서와 참조문서에는 없는 플러스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베트남은 아직 국영 통신사의 민영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독립적 규제기관 조항의 완벽한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으며, 베트남 인터넷 접속 서비스(ISP) 사업자들이 일부 해외 유명 인터넷 사이트를 불명확한 사유로 접속을 차단하거나, 행정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아직까지 자국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베트남 FTA 협상을 통해 보다 강화된 통신 협정문을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의 통신 사업자가 보다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을 제공받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하연 외 (2012), 『2012 FTA 협상대상국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개방 및 규제제도 현황』, 정책자료 12-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2. 8. 10), “베트남 인터넷 서비스 시장, 외국인 투자 관심 분야로 부상”, 해외투자속보.
- 디지털타임스 (2005. 1. 7), “KT·SKT 베트남 통신사업 ‘제동’”.
- 매일경제 (2012. 1. 12), “NHN, 베트남·터키·독일 진출”.
- 산업통상자원부 (2013. 5. 27), ‘한-베트남 FTA 제2차 협상 개최’. 보도자료.
- 연합뉴스 (2009. 10. 13), “SKT, 베트남 이통사업 철수 수순”.
- \_\_\_\_\_ (2010. 1. 4), “SKT, 베트남 이통사업서 철수 결정”.
- \_\_\_\_\_ (2011. 3. 16), “이베이, 베트남 전자상거래업체 지분 인수”.
- \_\_\_\_\_ (2012. 12. 13), “NTT Com, 베트남 네트워크 서비스 출시 위해 면허장 획득”.
- 외교통상부 (2012. 9. 4), ‘한·베트남 양자통상장관회담 및 FTA 제1차 협상 개최 결과’. 보도자료.
- BMI (2013). “Vietnam Telecommunications Report Q3 2013”.
- IMF (2012).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 Thanh Nien Daily (2012. 4. 27). “Russian telecom giant withdraws from Vietnam”.
- USTR (2012). Results of the 2012 Section 1377 Review of Telecommunications Trade Agreements.
- \_\_\_\_\_ (2012).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 Vietnam.
- \_\_\_\_\_ (2013).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 Vietnam.
- WTO (2007). GATS/SC/142, 2007. 3. 19.
- ZDnet (2013. 4. 9), “카톡-라인, 베트남서 한류 타고 ‘쑥쑥’”.

KOTRA Global Window 홈페이지 <http://www.globalwindow.org>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FTA 사이트(<http://www.fta.go.kr/new2/main/>)

베트남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아세안-한국 FTA 협정문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협정문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수출입은행 통계자료

베트남 통계청

<첨부 1> 베트남 WTO GATS 통신서비스 양허표

구 분	시장진입제한	내국민대우제한
a. 음성전화	M1: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유선 및 이동 통신 서비스: 베트남에서 설립되고 국제 통신 서비스 제공 허가를 받은 주체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b. 패킷교환데이터전송		
c. 회선교환데이터전송		
d. 텔렉스		
e. 전신	위성기반 서비스: 다음 대상에게 제공되는 위성기반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베트남에서 정당하게 허가받은 국제 위성서비스 제공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하여 제공함 - WTO 가입 즉시: 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역외 및 해상 기반 기업 고객, 정부 기관,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 국제 공식 기구의 대표 사무소, 외교대표부 및 영사관, 하이테크 및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 - WTO 가입으로부터 3년 후: 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다국적 기업 <sup>27)</sup>	M1: 제한 없음 M2: 제한 없음 M3: 제한 없음 M4: 수평적 양허 외 미양허
f. 팩스		
g. 전용회선	M2: 제한 없음 M3: 제한 없음	
o. 기타(화상회의, 방송을 제외한 비디오전송, 이동전화(지상 및 위성), 이동데이터(지상 및 위성), 호출, PCS, 주파수공용, 인터넷 교환 (IXP))	M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비 설비기반 서비스: WTO 가입 즉시 베트남에서 정당하게 허가받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됨.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은 합작 회사 법정 자본금의 51%를 초과할 수 없음 WTO 가입으로부터 3년 후: 합작 회사 설립시 파트너 선택권 제한이 삭제됨.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은 법정 자본금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설비기반 서비스: WTO 가입 즉시 베트남에서 정당하게 허가받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됨. 외국 자본 출자비율은 합작회사 법정자본금의 49%를 초과할 수 없음 합작 회사 지분의 51%를 보유하면 경영권을 확보함	

27) 다국적 기업은 다음 조건을 갖춘 주식회사를 의미함: a) 베트남에 상업적 주체가 설립됨. b) 하나 이상의 다른 당사국에서 운영 중임. c) 5년 이상 사업 운영. d) 당사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음. 그리고 e) 하나 이상의 당사국에서 위성 서비스 사용이 허가됨.

구 분	시장진입제한	내국민대우제한
<p>o. 기타(화상회의, 방송을 제외한 비디오전송, 이동전화(지상 및 위성), 이동데이터(지상 및 위성), 호출, PCS, 주파수공용, 인터넷 교환(IXP))</p>	<p>통신 분야에서 경영협력 계약을 통해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는 현재 계약을 갱신하거나 또는 현재 조건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다른 형태의 설립체로 전환할 수 있음</p> <p>M4: 수평적 양허 외 미양허</p>	<p>M1: 제한 없음 M2: 제한 없음 M3: 제한 없음 M4: 수평적 양허 외 미양허</p>
<p>o. 기타(가상개인통신망(VPN))</p>	<p>M1: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유선 및 이동 통신 서비스를 제외하고 제한 없음: 유선 및 이동 통신 서비스는 베트남에서 설립되고 국제 통신 서비스 제공 허가를 받은 주체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p> <p>위성 기반 서비스: 다음 대상에게 제공되는 위성 기반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베트남에서 정당하게 허가받은 국제 위성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하여 제공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 가입 즉시: 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역외 및 해상 기반 기업 고객, 정부 기관, 설비 기반 서비스 공급자,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 국제 공식 기구의 대표 사무소, 외교대표부 및 영사관, 하이테크 및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li> <li>- WTO 가입으로부터 3년 후: 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다국적 기업</li> </ul> <p>M2: 제한 없음</p> <p>M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비 설비 기반 서비스: WTO 가입 즉시 파트너 선택권 제한없이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됨.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은 합작회사 법정 자본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p> <p>설비 기반 서비스: WTO 가입 즉시 베트남에서 정당하게 허가받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됨.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은 합작회사 법정 자본금의 49%를 초과할 수 없음</p> <p>M4: 수평적 양허 외 미양허</p>	<p>M1: 제한 없음 M2: 제한 없음 M3: 제한 없음 M4: 수평적 양허 외 미양허</p>

구 분	시장진입제한	내국민대우제한
h. 이메일	M1: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유선 및 이동 통신 서비스: 베트남에서 설립되고 국제 통신 서비스 제공 허가를 받은 주체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M1: 제한 없음 M2: 제한 없음 M3: 제한 없음 M4: 수평적 양허 외 미양허
i. 음성메일		
j. 온라인 정보/DB 검출		
k. EDI		
l. 고도/부가 팩스		
m. 부호/프로토콜 변환		
n. 온라인 정보/데이터 처리	위성 기반 서비스: 다음 대상에게 제공되는 위성기반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베트남에서 정당하게 허가 받은 국제 위성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하여 제공함 - WTO 가입 즉시: 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역외 및 해상 기반 기업 고객, 정부 기관,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 국제 공식 기구의 대표 사무소, 외교대표부 및 영사관, 하이테크 및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 - WTO 가입으로부터 3년 후: 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다국적 기업 M2: 제한 없음 M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비 설비기반 서비스: WTO 가입 즉시 파트너 선택권 제한없이 합작회사 설립이 허용됨.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은 합작회사 법정 자본금의 51%를 초과할 수 없음 WTO 가입으로부터 3년 후: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은 법정자본금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설비기반 서비스: WTO가입 즉시 베트남에서 정당하게 허가받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합작회사 설립 또는 경영 협력 계약 체결이 허용됨 외국 자본 출자비율은 합작회사 법정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합작 회사 지분의 51%를 보유하면 경영권을 확보함 통신 분야에서 경영협력 계약을 통해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는 계약을 갱신하거나 현재의 조건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다른 형태의 설립체로 전환할 수 있음 M4: 수평적 양허 외 미양허	M1: 제한 없음 M2: 제한 없음 M3: 제한 없음 M4: 수평적 양허 외 미양허

구 분	시장진입제한	내국민대우제한
o. 기타(인터넷 접속 서비스(IAS))	<p>M1: 유선 및 이동 통신 서비스: 베트남에서 설립되고 국제 통신 서비스 제공 허가를 받은 주체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p> <p>위성 기반 서비스: 다음 대상에게 제공되는 위성기반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베트남에서 정당하게 허가받은 국제위성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하여 제공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 가입 즉시: 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역외 및 해상 기반 기업 고객, 정부 기관, 설비기반 서비스공급자,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 국제 공식 기구의 대표 사무소, 외교대표부 및 영사관, 하이테크 및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li> <li>- WTO 가입으로부터 3년 후: 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다국적 기업</li> </ul> <p>M2: 제한 없음</p> <p>M3: 비 설비기반 서비스: WTO 가입 즉시 베트남에서 정당하게 허가받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됨.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은 합작 회사 법정 자본금의 51%를 초과할 수 없음</p> <p>WTO 가입으로부터 3년 후: 합작 회사 설립시 파트너 선택권 제한이 삭제됨.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은 법정 자본금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p> <p>설비기반 서비스: WTO 가입 즉시 베트남에서 정당하게 허가받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됨. 외국 자본 출자비율은 합작회사 법정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p> <p>M4: 수평적 양허 외 미양허</p>	<p>M1: 제한 없음</p> <p>M2: 제한 없음</p> <p>M3: 제한 없음</p> <p>M4: 수평적 양허 외 미양허</p>
추가약속	참조문서	수용
	기타 규제원칙	<p>베트남이 당사자인 해저케이블 링크 컨소시엄의 경우,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베트남 내 허가 받은 케이블 육양국까지 연결된 100% 자기 소유 케이블 전송 용량(예. 장기계약을 통한 회선 임대(IRU) 또는 컨소시엄 소유)을 통제할 수 있으며 베트남 내 허가 받은 국제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러한 용량을 제공할 수 있음</p> <p>WTO 가입으로부터 4년 후,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그러한 용량을 베트남 내 허가받은 국제 VPN 및 IXP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p>

주: 1) w/120 분류코드 수용

2) M1(Mode 1: 국경간공급), M2(Mode 2: 해외소비), M3(Mode 3: 상업적 주재), M4(Mode 4: 자연인의 이동)